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39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김태년 ·김한규 · 박희승

맹성규 • 이훈기 • 홍기원

김태선 · 김영배 · 박균택

염태영 · 손명수 · 박홍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기술 유출 침해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의 이익에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또 는 산업기술이 외국에서도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 형 량과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호의3).
- 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유출 행위에 포함함(안 제14조제 9호 신설).
- 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제36조제1항).
- 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자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

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 2항).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의3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제36조제1항 전단 중 "국가핵심기술을"을 "국가핵심기술이"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3년"을 "5년"으로, "처한다"를 "처하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로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기술을"을 "산업기술이"로, "사용하거나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15년"을 "20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행위 금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	6의3
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	
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	
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	
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	
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	
제를 요구받고도 <u>부정한 이익</u>	이를
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	
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	
을 보유하는 행위	
7. · 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해
	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하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을</u> 지 외국에서 <u>사용하거나 사용되게</u> <u>할 목적으로</u>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u>3년</u> 이상 의 유기징역에 <u>처한다</u>.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u>다</u>. <단서 신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u>사용</u>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u>15년</u>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거나 유인하는 행위</u>
]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이</u>
<u>사용될 것임을 알</u>
<u>면서도</u>
<u>5년</u>
<u>처하되, 15억원</u>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후
단 삭제> 다만, 벌금형에 처하
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
상 이득액이 15억을 초과할 때
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
<u>다.</u>
② <u>산업기술이</u> <u>사용</u>
될 것임을 알면서도
<u>20년</u>
<u>다만, 벌</u>
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
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15억
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
배 이상 5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